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

농림수산부 고시 제 1995-81호('95. 9. 25)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처리 요령에 의거 국산농수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추가 지정되었고 농수산물가공품에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이 추가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시행상의 문제로 인하여 농림수산부 및 관련업체와의 협의('95. 11. 30)를 거쳐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일부 해석상의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별 계도기간에 대한 세부지침(농림수산부 유관 51160-734)이 시달되었고 당 협회에서는 책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처리 요령”을 인쇄하여 전회원사(113개사)에 배부하였다.

### □ 주요골자(농산물 원산지 업무처리 요령 세부지침 참조)

#### 가. 계도기간

1) 농림수산부 고시 1995-81호('95. 9. 25)에 의한 추가지정품목 - 계도기간 : '96. 12. 31까지

① 농수산물 가공품 중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총 24개품목

② 국산 농수산물 중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총 164개 품목

2) 농림수산부 고시 1995-60호('94. 11. 1)에 의한 기지정품목 - 계도기간 : '96. 6. 30까지

① 국산 농수산물 중 산양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등 총 63개품목

② 농수산물 가공품 중 육포류 등 총 30개 품목류

3) 수입 농수산물 중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총 189개 품목 - 계도기간 없이 기존대로 시행 ('91. 7월부터 시행되었음)

###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업무처리요령 세부지침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 1995-81호(95. 2. 25)> 중 제5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 세부지침 및 계도기간은 다음과 같다.

#### ■ 농수산물 원산지 업무처리요령 세부지침

항 목	세 부 지 침
■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특정원료를 3개국 이상 국가에서 수입하여 동시 사용함으로써 원료의 생산국명을 모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나. 원료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원료의 공급처(생산국)가 빈번하게 바뀌어 생산국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항 목	세 부 지 침
	<p>(1) 최근 3년 이내에 원산지 또는 함량배합비율이 연 평균 3회 이상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동안 연 3회 이상 원산지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p> <p>(2) 3년 미만의 가공품 생산업체는 평균 4개월 동안에 1회 이상 원산지 표시 사항이 변경된 경우</p> <p>다. 기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도 생산국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p> <p>(1) 원료 구입선 및 배합비율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포장재 제작이 어려운 경우 다만, 원산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p> <p>(2) 기타 주의를 다하여도 표시하기가 여려운 경우</p>
■ 계도기간의 설정	<p>2.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계도기간은 다음과 같다.</p> <p>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처리 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 1995-81호 &lt;95.9.25&gt;) 으로 신규지정된 국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 1996년 12월 31일까지</p> <p>나.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검사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 1994-60호&lt;1994. 11. 1&gt;에서 지정한 원산지 표시 대상 가공품 : 1996년 6월 30일까지</p>
■ 혼합특정성분의 표시	<p>3.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처리요령 제5조 제1호 “나”목의 특정성분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 혼합 특정성분 명칭이 제품명으로 사용되는 때는 혼합특정성분 원료중 대표적인 원료 2가지를 표시, 또한 주 원료는 관계규정에 의해 표시</p> <p>(예) 해물탕면의 경우</p> <p>① 원료원산지 밀가루 90% (미국산 50, 캐나다산 40) 해 물 7% (미국산 다시마 2, 중국산 새우 2)</p>
■ 배합비율 증감범위 20%의 적용기준	<p>4. 배합비율 증감범위 20퍼센트의 적용기준은 특정원료의 수입산 총함량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표시방법은 국별 함유비율을 표시하거나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p> <p>예) ① 원료원산지 : 배과즙 50%(미국산 30, 브라질산 20) ※ 배과즙 50%의 20%인±10% 이내 변경(미국 30±10%, 브라질 20±10% 가능)시 기존포장재 사용허용</p> <p>② 원료원산지 : 배과즙 50%(미국, 브라질)</p>

### 참고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처리 요령 중 제5조 및 제20조 규정

제5조(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 기준 및 방법) 제3조의 원산지 표시 대상 가공품에 대한 원료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기준은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물 또는 첨가물은 함량순위 및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표시기준

- 가.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는 사용된 당해 원료농수산물의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농수산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원료 농수산물 1가지,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농수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2가지 원료농수산물의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류·식염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특정성분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성분의 원료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성분의 원료의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다. 가공업자는 가공품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 대상 외의 원료에 대하여 그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 2. 표시방법

- 가. 국산원료는 “국산”이라 표시하되, 가공업자의 필요에 따라 생산지의 시·군명을 표시할 수 있다.
- 나. 수입원료는 생산국명을 표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국명의 표시가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수입산”이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관리 전담기관의 장은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특정원료를 3개국 이상 국가에서 수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원료의 생산 국가명을 모두 표시

하기가 곤란한 경우

- (2) 원료의 가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료의 공급처(생산국)가 빈번하게 바뀌어 생산국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3) 기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도 생산국명을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 다. 동일 원료로 국산원료와 수입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국산원료와 수입원료를 함량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라. 원료 농수산물을 2차 이상 가공한 원료를 보관·저장 또는 숙성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할 때는 식품공전상 당해 제품의 기준당도, 성분배합기준에 따라 원료의 배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오렌지쥬스의 경우 오렌지과즙 100% <국산 30%, 브라질산 70%>)
- 마.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에서 1차 가공하여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원료의 원산지는 그 원료의 생산국명을 표시하되, 가공업자의 필요에 따라 그 원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20조(세부 실시요령) ① 검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실시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유통관리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 가. 수입 농수산물(HS4 단위 178개 품목)

구 분	분 류 내 용
제2류	육(肉)과 식용설육
제3류	어류(魚類), 갑각류, 연체(軟體) 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제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鱗莖), 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切花) 및 장식용의 잎
제7류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塊莖)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堅果)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제9류	커피, 차, 마태(茶의 一種) 및 향신료
제10류	곡물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麥芽), 전분(澱粉), 아눌린 및 밀의 글루텐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식물성 액즙), 겹,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액스
제15류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의 조제 식료품
제22류	음료, 알콜 및 식초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제24류	담배와 조제한 담배대용물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제46류	짚, 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粗物) 재료의 제품, 농세공물 및 지조(枝條) 세공물
제48류	지(紙)와 판지, 제지용 펠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 나. 국산 농수산물(127개 품목)

항 목	기 지 정 품 목	추 가 품 목
곡 류	쌀(멥쌀, 찹쌀, 현미), 보리쌀(보리쌀, 할맥, 놀린부리쌀), 올무(올무, 올무쌀)	밀, 옥수수
잡 곡 류	—	좁쌀, 수수쌀, 기장쌀, 메밀, 팝콘옥수수
두 류	콩(콩나물콩 포함), 팔, 녹두	검정콩, 파란콩, 기타 콩, 검정팔, 붉은팔 녹색팔, 깐녹두
서 류	—	고구마, 감자
채유종실	땅콩, 참깨, 들깨	알땅콩, 볶은땅콩, 검정참깨, 볶은참깨, 볶은들깨
채 소 류	건고추, 마늘, 양파	깐마늘, 쪽마늘, 깐양파, 건조양파, 깐생강, 절단생강, 도라지, 더덕, 당근, 오이, 가지, 연근, 건조호박, 무말랭이,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약 재 류	작약, 황기, 천궁, 당귀, 도라지, 사삼, 산약, 향부자	갈근, 감초, 강활,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독활, 두충, 만삼, 백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산수유, 오배자, 우슬, 원황정, 자소 음양곽, 익모초,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마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백, 황금, 행인, 현삼, 후박
과 실 류	참다래, 파인애플	사과, 배, 단감, 감귤, 감, 살구, 매실, 멜론, 토마토, 앙두, 무화과, 유자, 벼찌
버 셋 류	영지버섯	팽이버섯, 양송이
인 삼 류	수삼	—
임 산 물	고사리, 취나물, 송이버섯, 표고버섯, 호도, 잣, 밤, 대추, 곶감	은행
축 산 물	산양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천연꿀, 녹용, 녹각	<u>쇠고기</u> , <u>돼지고기</u> , <u>닭고기</u>
수 산 물	굴비, 아귀, 대구, 고등어, 부세, 가자미, 볶어, 뱃장어, 미꾸라지, 냉동갈치, 냉동오징어, 냉동홍어, 냉동참치, 냉동조기, 냉동돔, 냉동명태, 냉동청어, 냉동정어리, 냉동고등어, 냉동가오리, 냉동대하, 마른미역, 마른오징어	처리형태를 불문하고 비식용, 젓갈류를 제외한 모든 수산물

## 다. 농수산물 가공품

항 목	기 지 정 품 목(A)	추 가 품 목(B)	A+B
	30개류	24품목	54품목류
과자류	쨈류 (1)	식빵 (1)	2
유가공품	우유류, 젤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류 (3)	분유류, 치이즈, 버터류 (3)	6
<u>식육제품</u>	—	햄, 소시지, 베이컨류 (3)	3
통·병조림	(농산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살구, 매실, 자두, 참다래, 토마토, 딸기, 밤 (수산물) 고등어, 전갱이, 삼치, 정어리, 꽁치, 달랑어, 연어, 꽈리 (2)	—	2
두부류	묵류(포장된 것) (1)	두부(포장된 것) (1)	2
식용유지	참기름, 들기름 (2)	대두유, 옥수수, 낙화생유 (3)	5
면류	—	국수, 당면, 라면 (3)	3
다류	침출차(녹차, 홍차, 우롱차, 보리차, 결명자차) 추출차(칡차, 구기자차, 당귀차, 두충차, 오가피차, 오미자차, 영지차, 생강차) 분말차(땅콩차, 율무차) 과실차(유자차) (4)	대추차 (1)	5
청량음료	과실, 채소음료(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살구, 매실, 자두, 참다래, 토마토, 딸기) (1)	채소 (1)	2
인삼제	백삼, 홍삼, 태극삼, 농축인삼류 인삼분말, 인삼차류, 당침인삼 (7)	—	7
조미식품	—	간장, 된장, 고추장, 캐찹 (4)	4
절임식품	절임식품(마늘, 양파) (1)	오이, 무 (2)	3
단순가공	땅콩가공품, 견과류가공품, 과실 채소류가공품(고춧가루포함), 곡물 가공품(찹쌀, 보리, 팥, 녹두) 특용, 기호작물 가공품, 육포류, 조미어포류 (8)	밀, 조미김 (2)	10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구 분	표 시 요 령																			
1. 통관된 상태 그대로 유통되는 농수산물	<p>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 관리 세칙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의해 표시하되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li> <li>(2)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표시할 것.</li> <li>(3)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li> <li>(4)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li> </ul> <p>다만, 의도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배포. 보관과정에서 손상되지 않고, 최종구매자에게 도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p>																			
2. 포장되어 유통되는 농수산물(통관된 후 재포장하여 판매되는 농수산물 포함)	<p>가. 원산지 표시 활자 크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포 장 전 면 크 기</th> <th>활 자 크 기</th> </tr> </thead> <tbody> <tr> <td>30cm이상 × 20cm 이상 또는 600cm<sup>2</sup> 이상</td> <td>38point 이상</td> </tr> <tr> <td>15cm이상 × 10cm 이상 또는 150cm<sup>2</sup> 이상</td> <td>20point 이상</td> </tr> <tr> <td>10cm이상 × 5cm 이상 또는 50cm<sup>2</sup> 이상</td> <td>12point 이상</td> </tr> <tr> <td>10cm이상 × 5cm 미만 또는 50cm<sup>2</sup> 미만</td> <td>8point 이상</td> </tr> </tbody> </table>		포 장 전 면 크 기	활 자 크 기	30cm이상 × 20cm 이상 또는 600cm <sup>2</sup> 이상	38point 이상	15cm이상 × 10cm 이상 또는 150cm <sup>2</sup> 이상	20point 이상	10cm이상 × 5cm 이상 또는 50cm <sup>2</sup> 이상	12point 이상	10cm이상 × 5cm 미만 또는 50cm <sup>2</sup> 미만	8point 이상								
포 장 전 면 크 기	활 자 크 기																			
30cm이상 × 20cm 이상 또는 600cm <sup>2</sup> 이상	38point 이상																			
15cm이상 × 10cm 이상 또는 150cm <sup>2</sup> 이상	20point 이상																			
10cm이상 × 5cm 이상 또는 50cm <sup>2</sup> 이상	12point 이상																			
10cm이상 × 5cm 미만 또는 50cm <sup>2</sup> 미만	8point 이상																			
	<p>나. 위치 : 포장전면 좌측 상단에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p> <p>다. 색깔 : 포장지 바탕색과 구별할 수 있는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한다.</p>																			
3. 날개 또는 산물로 유통되는 농수산물(통관된 후 재포장하지 않고 날개 또는 산물거래 농수산물 포함)	<p>라.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포장지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랩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스티카 부착도 예외적으로 허용</li> <li>(2) 그물망 재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부착 및 내찰 허용</li> </ul> <p>가. 다음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표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표 시 방 법</th> <th>규 격</th> </tr> </thead> <tbody> <tr> <td>날개판매</td> <td>스티카 부착(현품)</td> <td>가로 3cm × 세로2cm이상 또는 직경 2.5cm이상</td> </tr> <tr> <td>용기판매</td> <td>용기에 표시</td> <td>가로15cm × 세로10cm이상</td> </tr> <tr> <td>"</td> <td>풋말 표시</td> <td>가로15cm × 세로10cm, 높이 10cm이상</td> </tr> <tr> <td>산물거래</td> <td>상품안내 표시판(판매장소)</td> <td>가로30cm × 세로50cm이상</td> </tr> <tr> <td>진열판매</td> <td>안내표시판(진열대)</td> <td>가로 7cm × 세로 5cm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표 시 방 법	규 격	날개판매	스티카 부착(현품)	가로 3cm × 세로2cm이상 또는 직경 2.5cm이상	용기판매	용기에 표시	가로15cm × 세로10cm이상	"	풋말 표시	가로15cm × 세로10cm, 높이 10cm이상	산물거래	상품안내 표시판(판매장소)	가로30cm × 세로50cm이상	진열판매	안내표시판(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이상
구 분	표 시 방 법	규 격																		
날개판매	스티카 부착(현품)	가로 3cm × 세로2cm이상 또는 직경 2.5cm이상																		
용기판매	용기에 표시	가로15cm × 세로10cm이상																		
"	풋말 표시	가로15cm × 세로10cm, 높이 10cm이상																		
산물거래	상품안내 표시판(판매장소)	가로30cm × 세로50cm이상																		
진열판매	안내표시판(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이상																		

##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시의 처벌규정

### 가. 법적근거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벌칙)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동법 시행 규칙 제 54조 (과태료)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 (농림수산부 고시 제 1995-81호 : '95. 9. 25)

### 나. 과태료

#### 1) 농산물

- 부과대상 :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부과기준 : 최소 3만원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 2) 농산가공품

- 부과대상 : 원산지 표시 대상 가공품에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가공업자
  - 1차 위반자 :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2차 이상 위반자 : 상기의 1차 위반자가 처분을 받은 다음날 이후에 제조·가공한 제품에 다시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원산지 표시에 불응하는 자

### 다. 고발

- 고발대상자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자
  - 수입농산물을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자
  - 수입농산물을 국산품과 혼합하여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자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과태료 부과 기준액

(단위 : 만원)

연 간 매 출 액	1차위반자	2차이상위반자
200백만원 미만	25	50
200백만원 이상~ 400백만원 미만	50	100
400백만원 이상~ 600백만원 미만	100	200
600백만원 이상~ 800백만원 미만	150	300
800백만원 이상~ 1000백만원 미만	200	400
1000백만원 이상~ 1200백만원 미만	250	500
1200백만원 이상~ 1400백만원 미만	300	600
1400백만원 이상~ 1600백만원 미만	350	700
1600백만원 이상~ 1800백만원 미만	400	800
1800백만원 이상~ 2000백만원 미만	450	900
2000백만원 이상	500	1,000

##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 고발 포상금 지급요령

(농림수산부 공고 제 95-20 : '95. 3. 22)

### 가. 지급대상

농수산물(수입쇠고기 제외) 원산지 표시 위반자를 주무관청에 고발한 자

### 나.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와 유통관리 전담기관  
(국립농산물 검사소 본소 (0343) 46-6060,  
해당지역 농산물검사소)

### 다. 지급기준

부정유통물량(건당가액)	포상금지급(건당)	비 고
20만원 미만	50,000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000원	공무원은 민간인의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0,000원	1/2지급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000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0,000원	
1,000만원 이상	500,000원	

\*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 부정유통 신고(검거)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별도 지급